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조용훈 의원 외 5명
발의연월일	2019. 6. 13.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84호
----------	------

발의연월일 : 2019. 6. 13.
대표발의자 : 조용훈
공동발의자 : 박승용 김만중
조배식 박영자
차경선

1. 제안이유

- 지역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경찰연합회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도모하고, 단체의 내실화·활성화를 통하여 자율성 제고 및 조직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교통질서유지, 기초질서 계도 등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시민경찰의 임무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 및 보조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보조금 지원 관련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시민경찰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바. 준용 규정(안 제8조)
- 사. 시행규칙(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6. 14. ~ 6 . 19.(6일간)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논산시 시민경찰연합회”(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논산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질서유지 활동,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시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회원에게 「논산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활동하고 있는 시민경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조용훈 의원 외 5명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논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